

[변 경 대 비 표]

■ 변경 집합투자기구 및 변경 서류

편	드	명	BNK튼튼코리아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		
변	경	서	류	집합투자계약		
변	경	사	유	직판 클래스 신설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	
효	력	발	생	일	2022년 03월 18일	

■ 변경대비표

항목	변경사유	변경 전	변경 후
제3조 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	직판클래스 신설	① ~ ② (생략) 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. 1. ~ 19. (생략) <u>20. ~ 22. <신설></u>	① ~ ② (현행과 동일) 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. 1. ~ 19. (현행과 동일) <u>20. Class J-e 수익증권: 집합투자업자가 개설한 모바일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 수익증권</u> <u>21. Class J-Pe 수익증권: 집합투자업자가 개설한 모바일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,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는 수익증권</u> <u>22. Class J-P2e 수익증권: 집합투자업자가 개설한 모바일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,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는 수익증권</u>
제9조 (수익권의 분할)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① 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<u>표시한다.</u> ② (생략)	① 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<u>발행한다.</u> ② (현행과 동일)
제10조	직판클래스 신설	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	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

(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)	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<u>수익증권 발행가액</u>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(이하 "전자증권법"이라 한다)」에 따른 <u>전자등록기관</u>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. 1. ~ 19. (생략) 20. ~ 22. <신설> ②~⑤ (생략)	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<u>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</u>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(이하 "전자증권법"이라 한다)」에 따른 <u>전자등록의 방법</u>으로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 1. ~ 19. (현행과 동일) 20. Class J-e 수익증권 21. Class J-Pe 수익증권 22. Class J-P2e 수익증권 ②~⑤ (현행과 동일)
제14조 (수익자명부)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①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<u>한국예탁결제원</u>에 위탁하여야 한다. ② 집합투자업자는 <u>한국예탁결제원</u>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, <u>한국예탁결제원</u>은 관련법령·신탁계약서·위탁계약서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 ③ (생략) ④ 집합투자업자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<u>한국예탁결제원</u>에 통지하여야 한다. ⑤ <u>한국예탁결제원</u>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. 1. ~ 2. (생략) ⑥ 제5항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<u>예탁결제원</u>은 그 통	①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에 따른 <u>전자등록기관</u>(이하 "전자등록기관"이라 한다)에 위탁하여야 한다. ② 집합투자업자는 <u>전자등록기관</u>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, <u>전자등록기관</u>은 관련법령·신탁계약서·위탁계약서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 ③ (현행과 동일) ④ 집합투자업자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<u>전자등록기관</u>에 통지하여야 한다. ⑤ <u>전자등록기관</u>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. 1. ~ 2. (현행과 동일) ⑥ 제5항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<u>전자등록기관</u>은 그

		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수익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,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. ⑦ ~ ⑧ (생략)	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수익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,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. ⑦ ~ ⑧ (현행과 동일)
제17조(투자대상자산 등)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① 집합투자업자는 --- (생략) ---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. 1. (생략) 2.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), 사채권(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BBB- 이상이어야 하며, 사모사채권,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<u>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</u> 또는 <u>한국주택금융공사법</u>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)(이하 "채권"이라 한다) 3.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<u>사채,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</u> 또는 <u>한국주택금융공사법</u>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(이하 "자산유동화증권"이라 한다) 4. ~ 11. (생략) ② (생략)	① 집합투자업자는 --- (생략) ---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. 1. (현행과 동일) 2.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), 사채권(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BBB- 이상이어야 하며, 사모사채권,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<u>사채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</u>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)(이하 "채권"이라 한다) 3.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<u>사채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</u>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(이하 "자산유동화증권"이라 한다) 4. ~ 11. (현행과 동일) ② (현행과 동일)
제19조(운용 및 투자제한)		집합투자업자는 --- (생략) --- 그러하지 아니하다. 1. (생략) 2. 이 투자신탁 --- (생략) --- 투자할 수 있다. 가. (생략) 나.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 --- (생략) ---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	집합투자업자는 --- (생략) --- 그러하지 아니하다. 1. (현행과 동일) 2. 이 투자신탁 --- (생략) --- 투자할 수 있다. 가. (현행과 동일) 나.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 --- (생략) ---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

		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 (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) 또는 어음,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</u> 또는 <u>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</u> 또는 <u>주택저당증권(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,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),</u> --- (이하 생략) --- 다. (생략) 3. ~ 8. (생략)	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 (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) 또는 어음, <u>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</u> 또는 <u>주택저당증권(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),</u> --- (이하 현행과 동일) --- 다. (현행과 동일) 3. ~ 8. (현행과 동일)
제23조 (운용행위 감시의무 등)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① (생략)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제1항의 따른 요구를 <u>제3영업일</u>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법 시행령 제269조제2항이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. ③ ~ ⑤ (생략)	① (현행과 동일)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제1항의 따른 요구를 <u>3영업일</u>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법 시행령 제269조제2항이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. ③ ~ ⑤ (현행과 동일)
제25조 (판매가격)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① 수익증권은 <u>다음</u>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로 판매한다. 1. Class A1 수익증권 : 선취판매 수수료가 징구되는 경우 2. Class C1 수익증권 : 제한없음 3. Class C-i 수익증권 : 납입금액 50억 이상 4. Class C-e 수익증권 : 온라인 전용 5. Class C-w 수익증권 :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(Wrap) 계좌를 보유한 자 또는 법제8조제7항에 의한 신탁업자 6. Class C2 수익증권 : Class C1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한 수익자	① 수익증권은 <u>제3조제3항</u>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로 판매한다 <u>1.~19. <삭제></u>

		7. Class C3 수익증권 : Class C2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한 수익자 8. Class C4 수익증권 : Class C3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한 수익자 9. Class C5 수익증권 : Class C4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한 수익자 10. Class C-f 수익증권 :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(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),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-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기금(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11. Class A-e 수익증권 :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온라인 12. Class S 수익증권 :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증권 13. Class C-P 수익증권 :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는 수익증권 14. Class C-P2 수익증권 :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,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 자 15. Class A-G 수익증권 :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가 입금을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	
--	--	--	--

		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 가능한 수익증권으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경우 16. Class C-G 수익증권 :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가입을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 가능한 수익증권 17. Class C-Pe 수익증권 :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전용 수익증권 18. Class C-P2e 수익증권 :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,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 자로서 온라인 전용 수익증권 19. Class S-P 수익증권 :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인가를 받은 회사(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,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② (생략) ③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15시 30분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(신규 수익증권의 종류를 발행하는 때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때에는 제30조제2항을 준용	② (현행과 동일) ③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15시 30분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(신규 수익증권의 종류를 발행하는 때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때에는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)으로 한다.
--	--	---	---

		한다)으로 한다.	
제26조 (환매업무)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①~⑤ (생략) ⑥ 본 조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(집합투자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)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<u>제4영업일</u>(15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<u>제4영업일</u>)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. ⑦~⑨ (생략)	①~⑤ (현행과 동일) ⑥ 본 조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(집합투자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)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<u>4영업일</u>(15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<u>4영업일</u>)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. ⑦~⑨ (현행과 동일)
제27조 (환매가격)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<u>제2영업일</u> (15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<u>제3영업일</u>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. 다만, 환매청구일이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(토요일은 제외한다)에는 제2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.	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<u>2영업일</u> (15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<u>3영업일</u>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. 다만, 환매청구일이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(토요일은 제외한다)에는 제2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.
제30조 (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)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① 집합투자업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. 기준가격[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]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·게시일 전날의 <u>대차대조표</u>상에 계상된 투자신탁[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]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(이하 "순자산총액"이라 한다)을 그 공고·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[당해 종류 수익증권]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, 1,000좌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 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. ②~③ (생략)	① 집합투자업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. 기준가격[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]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·게시일 전날의 <u>재무상태표</u>상에 계상된 투자신탁[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]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(이하 "순자산총액"이라 한다)을 그 공고·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[당해 종류 수익증권]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, 1,000좌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 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. ②~③ (현행과 동일)
제32조 (집합투자기구의 회계감사 등)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.	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.

		1. <u>대차대조표</u> 2.~3. (생략) ②~④ (생략)	1. <u>재무상태표</u> 2.~3. (현행과 동일) ②~④ (현행과 동일)
제35조(상환금 등의 지급)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① ~ ② (생략) ③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<u>한국예탁결제원</u> 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	① ~ ② (현행과 동일) ③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<u>전자등 록기관</u> 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
제39조 (보수)	직판클래스 신설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① (생략) ②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(이하 "보수계산기간"이라 한다)은 투자신탁의 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 보수를 매일 <u>대차대조표</u> 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 재산에서 인출한다. 1.~3. (생략) ③ 제1항의~한다. 1.~19. (생략) 20.~ 22. <신설>	① (현행과 동일) ②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(이하 "보수계산기간"이라 한다)은 투자신탁의 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 보수를 매일 <u>재무상태표</u> 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 재산에서 인출한다. 1.~3. (현행과 동일) ③ 제1항의~한다. 1.~19. (현행과 동일) 20. Class J-e 수익증권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7.0 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1.5 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3 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2 21. Class J-Pe 수익증권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7.0 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1.2 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3 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2

			22. Class J-P2e 수익증권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7.0 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1.1 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3 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2
제45조(집합투자기구의 해지)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① ~ ② (생략)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지, 합병 및 모자형 전환,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회사와 협의하여 정하며, 동 규정에 의거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사유, 해지일자,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<u>한국예탁결제원</u>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.	① ~ ② (현행과 동일)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지, 합병 및 모자형 전환,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회사와 협의하여 정하며, 동 규정에 의거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사유, 해지일자,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<u>전자등록기관</u>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.
제50조 (공시 및 보고서 등)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①~⑥ (생략) ⑦ 집합투자업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<u>한국예탁결제원</u>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<u>직접 또는 전자우편</u>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수익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,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. ⑧ 신탁업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 · 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<u>한</u>	①~⑥ (현행과 동일) ⑦ 집합투자업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<u>전자등록기관</u>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<u>직접,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</u>으로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수익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,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. ⑧ 신탁업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 · 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<u>전자등록기관</u>을 통하여 직접 또는

		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,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.	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,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.
제49조(금전차입 등의 제한)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① ~ ③ (생략) ④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재산 중 금전을 대여(<u>법시행령 제83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단기대출을 제외한다</u>)하여서는 아니된다. ⑤ (생략)	① ~ ③ (현행과 동일) ④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재산 중 금전을 대여(<u>제17조제2항제1호에서 정하는 단기대출은 제외한다</u>)하여서는 아니된다. ⑤ (현행과 동일)
제52조 (수익증권의 통장거래)	직판클래스 신설	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“수익증권저축약관”(Class C-P, C-Pe 및 S-P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“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”)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.	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“수익증권저축약관”(Class C-P, C-Pe, S-P 및 J-Pe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“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”)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.
<부칙>		<신설>	<부 칙 23> <u>제1조(시행일) 이 투자신탁 약관은 2022년 03월 18일부터 시행한다.</u>

<끝>.